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686

발의연월일: 2024. 9. 5.

발 의 자:유상범·송석준·조배숙

박준태 • 곽규택 • 신동욱

구자근 • 박충권 • 이철규

김미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 법에 따른 재외동포의 국내거소신고에 대한 사실증명 발급신청 근거를 규정하면서 가정폭력사건 관계자의 정보 접근에 대 한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가정폭력행위자가 현행법의 공백을 악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실증명 발급을 신청하더라도 거부할 근거 가 없는 상황임.

2020년 8월 28일 헌법재판소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 017. 10. 31. 법률 제14963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제1항이 가정폭력가해자에 대한 별도의 제한 없이 직계혈족이기만 하면 사실상 자유롭게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여 발급받을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가정폭력가해자에게 무단으로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피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입법을 추진하였으나, 2021년 12월 28일 「주민등록법」과「가 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그침으로써 현행법의 재외동 포 국내거소신고 정보에 대한 위헌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임.

이에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가정폭력행위자를 지정하여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그의 미성년 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 및 열람 제한 이나 그 제한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의 발급·열람 제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폭력행위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그의 미성년인 직계 비속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가정폭력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5항 및 제7조의2 신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자에게는"을 "사람 및 그의 법정대리인 그 밖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발급·열람의 제한) ① 「가정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이하 "가정폭력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대리인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이하 "가정폭력행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지방출입 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그의 미성년인 직계 비속의 제7조제5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 및 열람을 제한하거나 그 제한을 해지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②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 및 열람 제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은 제7조제5항에도불구하고 가정폭력행위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그의 미성년인 직계비속의 같은 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열람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발급·열람 제한 및 해지 신청 절차, 제출 서류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정폭력피해자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열람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가 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혂 행 개 정 아 제7조(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제7조(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 ① ~ ④ (생 략)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지방출입국 · 외국인관서의 장, 시·군·구 또는 읍·면· 동의 장은 제6조에 따라 국내 거소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 자 에게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람 및 그의 법정대리인 그 밖 바에 따라 국내거소신고 사실 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증명을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에게 ----할 수 있다. ⑥ ~ ⑨ (생 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의2(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u>발급·열람의 제한) ① 「</u>가정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피 해자(이하 "가정폭력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대리인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 자(이하 "가정폭력행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가정폭

력피해자 또는 그의 미성년인

직계비속의 제7조제5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 및 열람을 제한하거나 그 제한 을 해지하도록 신청할 수 있 다.

②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 고 사실증명의 발급 및 열람 제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은 제7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행위자 또는 그 대리 인에게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그의 미성년인 직계비속의 같은 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열람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이 경우 그 사유를 가정폭력행 위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발급·열람 제한 및 해지 신청절차, 제출 서류 등에 필요한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으로정한다.